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목 차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대비표	1
I. 지원목적	10
II. 지원근거	10
III. 지원대상	10
IV. 지원기간	10
V. 보조금의 관리	11
VI. 보조금의 사용제한	11
VII.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14
VIII.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5
1. 입학금 및 수업료	15
2. 법인전입금	15
3. 기타수입	17
IX.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18
1. 인건비	18
2. 법정부담금	24
3. 학교기본운영비	25
4. 고교 무상교육 등 수업료 지원·감면	26
5. 기타	26
X. 기준재정수요액 외 지원(실집행액 지원)	27
1.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지원	27
2.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	28



XI. 행정사항	30
1. 관계법규 준수	30
2.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30
3. 초과근무수당 관리 철저	30
4. 법정부담금 증대방안 강구	31
5. 재정결함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31
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31
【붙임 1】 인건비 산정기준 요약표	32
【붙임 2】 사무직원 정원기준	36
【붙임 3】 건물 가입 시 담보하는 기본 교구·설비 및 부속물의 기준	38
【붙임 4】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43
【붙임 5】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45
【붙임 6】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내용	47





참고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대비표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10	<p><수정></p> <p>IV 지원기간</p> <p>☑ 지원기간: 2021. 1. 1. ~ 2021. 12. 31.</p>	<p>IV 지원기간</p> <p>☑ 지원기간: 2020. 1. 1. ~ 2020. 12. 31.</p>								
12	<p><추가></p> <p>VI 보조금의 사용제한</p> <p>☑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본문 참조></p>	<p>VI 보조금의 사용제한</p> <p>☑ (추가)</p>								
15	<p><추가 및 삭제></p> <p>VII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p> <p>☑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는 기준재정수입과 관계없이 실제 집행액 지원</p>	<p>VII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p> <p>☑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고교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재정수입과 관계없이 실제 집행액 지원</p>								
15~17	<p><수정, 삭제 및 추가></p> <p>2. 법인전입금</p> <p>● 재정결함보조금 페널티 기준</p> <p>▶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미만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차감</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h colspan="2">페널티 산출식</th>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30 - \text{납부율}}{300} \right)$ </td> </tr> </table> <p>※ 차감기준금액: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p>▶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미만 납부 시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 추가 차감</p> <p>● 재정결함보조금 인센티브 기준</p> <p>▶ (이동)</p>	페널티 산출식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30 - \text{납부율}}{300} \right)$		<p>2. 법인전입금</p> <p>● 재정결함보조금 차감 기준</p> <p>▶ 법정부담금 부담기준 총액의 10%미만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차감</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r> <th>차감기준금액</th> <th>차감액 산출식</th> </tr> <tr> <td>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td> <td>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10 - \text{납부율}}{100} \right)$ </td> </tr> </table> <p>▶ (추가)</p> <p>● 재정결함보조금 인센티브 기준</p> <p>▶ 법정부담금 부담기준 총액의 30% 이상 납부 시 기준재정수입 법인전입금 납부액의 5% 추가 지원</p>	차감기준금액	차감액 산출식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10 - \text{납부율}}{100} \right)$
페널티 산출식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30 - \text{납부율}}{300} \right)$										
차감기준금액	차감액 산출식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기준금액-납부액) \times \left(\frac{10 - \text{납부율}}{100} \right)$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이상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311 436 782 577"> <tr> <th colspan="2">인센티브 산출식</th> </tr> <tr> <td colspan="2">$(\text{납부액} - \text{인센티브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30}{300} \right)$</td> </tr> </table> <p>※ 인센티브기준금액: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p>▶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50% 이상 납부 시 기준재정수입 법인전입금 납부액의 5% 추가 지원</p> <p>▶ 인센티브는 최대 1,000만원 지원 예) 법정부담금 30% 이상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400만원), 납부율 50%이상에 따른 인센티브(700만원) → 최종 인센티브(1,000만원) 지원</p>	인센티브 산출식		$(\text{납부액} - \text{인센티브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30}{300} \right)$		<p>▶ 법정부담금 부담기준 총액의 10%이상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858 436 1407 577"> <tr> <th>기준금액</th> <th>인센티브 산출식</th> </tr> <tr> <td>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td> <td>$(\text{납부액} - \text{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10}{100} \right)$</td> </tr> </table> <p>▶ (이동 및 수정)</p> <p>▶ 인센티브는 최대 1,000만원 지원 예) 법정부담금 30% 이상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400만원), 납부율 10%이상에 따른 인센티브(700만원) → 최종 인센티브(1,000만원) 지원</p>	기준금액	인센티브 산출식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text{납부액} - \text{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10}{100} \right)$
인센티브 산출식										
$(\text{납부액} - \text{인센티브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30}{300} \right)$										
기준금액	인센티브 산출식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text{납부액} - \text{기준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10}{100} \right)$									
18	<p><수정 및 추가></p> <p>IX 기준재정수요액 산정</p> <p>1. 인건비</p> <table border="1" data-bbox="271 1209 821 1612"> <tr> <th>■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th> </tr> <tr> <td>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며, 부당 청구, 과오 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환수 또는 감액 교부 할 수 있음</td> </tr> </table> <p>가. 정규 교원</p> <p>▶ 삭제</p> <p>▶ 지원대상</p> <p>- 사립학교의 폐과, 학급 수 감축의 사유로 발생한 과원 교원의 인건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단, 초·중등교육과에 보고·수리되어 인정한 경우에 한함)</p>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며, 부당 청구, 과오 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환수 또는 감액 교부 할 수 있음	<p>IX 기준재정수요액 산정</p> <p>1. 인건비</p> <p>(추가)</p> <p>가. 정규 교원</p> <p>▶ 지원근거</p> <p>▶ 지원대상</p> <p>- 정원초과 인원일 경우, 감독청에 보고·수리된 현원으로 재직 중에만 인정</p>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며, 부당 청구, 과오 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환수 또는 감액 교부 할 수 있음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19~21	<p><수정, 삭제 및 추가></p> <p>나. 계약제 교원</p> <p>▶ (삭제)</p> <p>▶ (삭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p style="text-align: center;">■ 퇴직금 산정 ■</p> <p>◆ 퇴직금=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 × 3/12 3.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직수당임 4.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div>	<p>나. 기간제 교원</p> <p>▶ 지원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p>▶ 계약제교원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정규교원의 미발령,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및 정규교원의 1개월 이상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 강사: 정규교원 결원 및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수한 교과목 담당,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운영을 위한 경우 임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p style="text-align: center;">■ 퇴직금 산정 ■</p> <p>◆ 퇴직금=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 × 3/12 3.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4.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div>
21~22	<p><수정, 삭제 및 추가></p> <p>다. 사무직원</p> <p>▶ (삭제)</p> <p>▶ 지원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p style="text-align: center;">■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비율 </div>	<p>다. 사무직원</p> <p>▶ 지원근거</p> <p>▶ 지원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p style="text-align: center;">■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p> <p>◆ 「사립학교 사무직원 결원충원 및 과원해소 계획」 (학교지원과-14380, 2017.10.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비율 </div>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 style="text-align: center;">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유예기간 3년 후</th> </tr> <tr> <th>1년차</th> <th>2년차</th> </tr> </thead> <tbody> <tr> <td>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td> <td>총 인건비의 50%</td> <td>미지원</td> </tr> </tbody> </table> <p>※ 단, 최초 1년차 인건비 50% 감액 시 과원학교에서 결원학교로 파견근무가 선행 또는 진행 중인 경우나 동일 시·군내 결원학교가 없어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과원학교의 정년(명예)퇴직자 퇴직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인건비 100% 지원</p> <p>※ 총 인건비: 매월 지급하는 나이스 상 급여총액의 합계 2. (예시) 2018.3.1.자 과원 발생인 경우 - 2018.3.1.~2021.2.28. ☞ 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 2021.3.1.~2022.2.28. ☞ 인건비 50% 감액(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1년차) - 2022.3.1.~ ☞ 인건비 미지원(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2년차부터)</p> <p>※ 연중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과원발생일 이후 첫 1일자로 적용</p>	구분	유예기간 3년 후		1년차	2년차	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	총 인건비의 50%	미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유예기간 3년 후</th> </tr> <tr> <th>1년차</th> <th>2년차</th> </tr> </thead> <tbody> <tr> <td>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td> <td>총 인건비의 50%</td> <td>미지원</td> </tr> </tbody> </table> <p>※ 총 인건비: 매월 지급하는 나이스 상 급여총액의 합계 2. (예시) 2018.3.1.자 과원 발생인 경우 - 2018.3.1.~2022.2.28. ☞ 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 2021.3.1.~2022.2.28. ☞ 인건비 50% 감액(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1년차) - 2022.3.1.~ ☞ 인건비 미지원(2018.2.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2년차부터)</p> <p>※ 연중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과원발생일 이후 첫 1일자로 적용</p>	구분	유예기간 3년 후		1년차	2년차	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	총 인건비의 50%	미지원
구분	유예기간 3년 후																	
	1년차	2년차																
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	총 인건비의 50%	미지원																
구분	유예기간 3년 후																	
	1년차	2년차																
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	총 인건비의 50%	미지원																
23	<p><수정, 삭제 및 추가></p> <p>라.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p> <p>▶ (삭제) ▶ 지원기준 - 기본급: 정액(2020년 기준 1,823,000원) ※ 시설관리용역 인력 채용시 2020년 기준 월 2,788,630원 지원 - 삭제 - 정액급식비: 정액(월 14만원) - 삭제</p>	<p>라.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p> <p>▶ 지원근거 ▶ 지원기준 - 기본급: 정액(2019년 기준 1,677,310원) ※ 시설관리용역 인력 채용시 2019년 기준 월 2,673,000원 지원 - 교통보조비: 정액(월 6만원) - 정액급식비: 정액(월 13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영수증 전액 지급(무상 교육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p>																
25~26	<p><수정, 삭제 및 추가></p> <p>3. 학교기본운영비</p> <p>● 【2021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p>	<p>3. 학교기본운영비</p> <p>● 【2020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p>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의 “202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p> <p>▶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2월분: 2020.9.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교특회계 본예산 작성 기준) - 2021년 3~12월분: 2021.3.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 <p>▶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본운영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건물유지비, 동력사용료(특성화고·고등기술·특수학교) <p>-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 체험형 안전교육 교구 구입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학교평등예산제(초·중·고·각종학교), 교원연구비(초·특수학교),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2021년 1~2월분)</p> <p>▶ 과원 해소에 따른 인센티브</p> <table border="1" data-bbox="295 1131 858 1579"> <thead> <tr> <th>구 분</th> <th>인센티브</th> </tr> </thead> <tbody> <tr> <td>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td> <td>▶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td> </tr> <tr> <td>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td> <td>▶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td> </tr> <tr> <td>파견근무제 시행 시</td> <td>▶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직급보조비 지원(월 2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인센티브	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	▶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	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파견근무제 시행 시	▶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직급보조비 지원(월 20만원)	<p>의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p> <p>▶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분: 2020.1.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 - 2020년 3~12월분: 2020.4.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 <p>▶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건물유지비, 동력사용료(특성화고·특수학교 등), 체험형 안전교육 교구 구입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학교평등예산제, 교원연구비 <p>※ 수학여행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별도 지원(체육예술건강과)</p> <p>▶ 과원 해소에 따른 인센티브</p> <table border="1" data-bbox="890 1131 1444 1579"> <thead> <tr> <th>구 분</th> <th>인센티브</th> </tr> </thead> <tbody> <tr> <td>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td> <td>▶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td> </tr> <tr> <td>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td> <td>▶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td> </tr> <tr> <td>파견근무제 시행 시</td> <td>▶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교통보조비 지원(월 1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인센티브	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	▶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	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파견근무제 시행 시	▶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교통보조비 지원(월 10만원)
구 분	인센티브																	
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	▶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																	
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파견근무제 시행 시	▶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직급보조비 지원(월 20만원)																	
구 분	인센티브																	
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	▶대상: 결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지원																	
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 과원법인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파견근무제 시행 시	▶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 받을 경우)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교통보조비 지원(월 10만원)																	
26	<p><수정, 삭제 및 추가></p> <p>4. 고교 무상교육 등 수업료 지원·감면</p> <p>가.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p>4. 고교 무상교육 등 수업료 지원·감면</p> <p>가.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table border="1" data-bbox="272 349 826 573">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2021년 1~2월 (2020학년도)</th> <th>2021년 3~12월 (2021학년도)</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학년</td> <td>1학년</td> <td>2, 3학년</td> <td>전 학년</td> </tr> <tr> <td>대상 학생</td> <td>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td> <td>해당학년 재학생 전체</td> <td>전체 재학생</td> </tr> </tbody> </table> <p>※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됨 - 지원액: 수업료 × 전체 학생 수</p> <p>나. 고교 무상교육 외 수업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 외 1학년 2학기 (2021.1~2월분)수업료 감면은 2020학년도 학비 감면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지침에 의함 	구분	2021년 1~2월 (2020학년도)		2021년 3~12월 (2021학년도)	지원 학년	1학년	2, 3학년	전 학년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전체	전체 재학생	<table border="1" data-bbox="863 349 1401 573"> <thead> <tr> <th>구분</th> <th>2020년 1~2월 (2019학년도)</th> <th>2020년 3~12월 (2020학년도)</th> <th>2021학년도</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학년</td> <td>3학년</td> <td>2, 3학년</td> <td>전 학년</td> </tr> <tr> <td>대상 학생</td> <td>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td> <td>해당학년 재학생 전체</td> <td>전체 재학생</td> </tr> </tbody> </table> <p>※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됨 - 지원액: 수업료 × 2,3학년 학생 수</p> <p>나. 고교 무상교육 외 수업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 외 1학년 수업료 감면은 2020학년도 학비 감면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지침에 의하되, 2020학년도 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 적용 (【붙임 3】 참조) 	구분	2020년 1~2월 (2019학년도)	2020년 3~12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전체	전체 재학생
구분	2021년 1~2월 (2020학년도)		2021년 3~12월 (2021학년도)																							
지원 학년	1학년	2, 3학년	전 학년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전체	전체 재학생																							
구분	2020년 1~2월 (2019학년도)	2020년 3~12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전체	전체 재학생																							
27~29	<p><수정 및 추가></p> <p>X 기준재정수요액 외 지원[실집행액 지원]</p> <p>1.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대상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특별담보) 보상하는 지진: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정한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 지진 공제회비 산출방식 : 교당 130,000원/년(학교급별 정액회비로 면적에 관계없음) <p>2.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2021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실태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 예산 반영(안전총괄담당관-4569, 2020. 9. 4.) 2021년 상·하반기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 대상: 2020년 하반기 지정·고시된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2020. 12. 정기점검 결과 별도 알림) 	<p>X 기준재정수요액 외 지원[실집행액 지원]</p> <p>1.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대상 (추가) <p>2.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2020년도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안전총괄담당관-5548, 2019.9.25.) (추가 및 수정) 대상 (추가 및 수정)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 제2종시설물: 옹벽, 절토사면</p> <p>-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C,D,E인 건축물</p> <p>▶ 2021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p> <p>- 제2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p> <p>·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p> <p>·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 부로써 단일 수평 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p> <p>-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295 846 849 1630"> <caption>제3종시설물 지정·고시</caption> <thead> <tr> <th>경과 년수</th> <th>기 준</th> <th>시행계획 (안)</th> </tr> </thead> <tbody> <tr> <td>준공 후 15년 경과</td> <td>1) 연면적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연면적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td> <td>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5.1.1.~ 2005.12.31. 인 건축물 대상</td> </tr> <tr> <td>준공 후 10년 경과</td> <td>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td> <td>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 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td> </tr> <tr> <td>건물 등급 기준</td> <td></td> <td>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td> </tr> </tbody> </table> <p>- 지원 기준단가</p> <p>· 제2종시설물: 해당 시설물 견적가에 따른 실 집행액 지원</p> <p>· 제3종시설물: 연면적 5,000㎡미만 176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220만원/동(실 집행액 지원)</p> <p>● 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지원</p> <p>▶ 대상: 준공일자 기준(2005.1.1.~2005.12.31.)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p>	경과 년수	기 준	시행계획 (안)	준공 후 15년 경과	1) 연면적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연면적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5.1.1.~ 2005.12.31. 인 건축물 대상	준공 후 10년 경과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 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	건물 등급 기준		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	<p>- (추가)</p> <p>● 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85 488 1437 1019"> <caption>제3종시설물 지정·고시</caption> <thead> <tr> <th>경과 년수</th> <th>연면적</th> <th>시행계획 (안)</th> </tr> </thead> <tbody> <tr> <td>준공 후 15년 경과</td> <td>1)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1,000㎡ 이상의 공공청사</td> <td>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4.7.1.~ 2005.6.30.인 건축물대상 (에듀빌 기준 44개동)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td> </tr> <tr> <td>건물 등급 기준</td> <td></td> <td>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td> </tr> </tbody> </table> <p>● 2020년 상·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비 지원</p> <p>▶ 대상: 2019년 하반기(2019.12.11.예정) 제 3종시설물 정기점검결과 안전등급 C,D,E인 건축물</p> <p>▶ 지원 기준단가: 연면적 5,000㎡미만 176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220만원/동(실 집행액 지원)</p> <p>● 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지원</p> <p>▶ 대상: 준공일자 기준(2004.7.1.~2005.6.30.)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p>	경과 년수	연면적	시행계획 (안)	준공 후 15년 경과	1)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4.7.1.~ 2005.6.30.인 건축물대상 (에듀빌 기준 44개동)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	건물 등급 기준		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
경과 년수	기 준	시행계획 (안)																					
준공 후 15년 경과	1) 연면적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연면적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5.1.1.~ 2005.12.31. 인 건축물 대상																					
준공 후 10년 경과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 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																					
건물 등급 기준		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																					
경과 년수	연면적	시행계획 (안)																					
준공 후 15년 경과	1) 1,000㎡ ~ 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5,000㎡ ~ 30,000㎡ 미만의 건축물 3)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가. 대상: 건축물 준공일 2004.7.1.~ 2005.6.30.인 건축물대상 (에듀빌 기준 44개동)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																					
건물 등급 기준		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 지원 기준단가: 연면적 5,000㎡미만 88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110만원/동</p> <p>3. 삭제</p> <p>● 이하 내용 삭제</p>	<p>▶ 지원 기준단가: 연면적 5,000㎡미만 88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110만원/동</p> <p>3. 고교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지원</p> <p>● 근거</p> <p>▶ '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계획(정책기획관-4407, 2019.4.22. 내부결재)</p> <p>▶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알림(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004, 2019.7.22.)</p> <p>● 사업내용</p> <p>▶ 지원대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2,3학년 재학생 전체</p> <p>▶ 지원액: 학생 실 부담액 × 2,3학년 학생 수</p> <p>● 업무처리 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858 1014 1417 1411"> <tr> <td data-bbox="858 1014 1121 1198"> <p>세입예산</p> <p>① [성질별]재정결함 보조금(운영비) 전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전입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td> <td data-bbox="1121 1014 1417 1198"> <p>세출예산</p> <p>② [사업별]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성질별]학생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학교계좌로 지원금 지출 처리 </td> </tr> <tr> <td data-bbox="858 1227 1121 1411"> <p>세입예산</p> <p>③ [성질별]학교운영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td> <td data-bbox="1121 1227 1417 1411"> <p>세출예산</p> <p>④ [사업별]학교운영 지원수당(예시) [성질별]교원연구비(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지출처리 </td> </tr> </table> <p>●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이중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p> <p>▶ 학부모의 직장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다 하더라도 무상교육대상에 포함되므로, 학비보조수당 신청 등의 용도로 민원서류(영수증) 발급 시 내용 확인 철저</p> <p>▶ 소속 교직원의 급여 업무 처리 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고등학교 2,3학년분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p>	<p>세입예산</p> <p>① [성질별]재정결함 보조금(운영비) 전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전입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p>세출예산</p> <p>② [사업별]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성질별]학생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학교계좌로 지원금 지출 처리 	<p>세입예산</p> <p>③ [성질별]학교운영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p>세출예산</p> <p>④ [사업별]학교운영 지원수당(예시) [성질별]교원연구비(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지출처리
<p>세입예산</p> <p>① [성질별]재정결함 보조금(운영비) 전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전입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p>세출예산</p> <p>② [사업별]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성질별]학생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학교계좌로 지원금 지출 처리 					
<p>세입예산</p> <p>③ [성질별]학교운영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편성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p>세출예산</p> <p>④ [사업별]학교운영 지원수당(예시) [성질별]교원연구비(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편성 - 지출처리 					
32~49	<p><수정, 삭제 및 추가></p> <p>【붙임 1】 인건비 산정기준 요약표(수정)</p> <p>【붙임 2】 사무직원 정원기준(변동없음)</p>					

쪽수	2021년도	2020년도
	<p>【붙임 3】 건물 가입 시 담보하는 기본교구·설비 및 부속물의 기준(수정)</p> <p>【붙임 4】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수정)</p> <p>【붙임 5】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수정)</p> <p>【붙임 6】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추가)</p> <p>【참고】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대비표(수정)</p> <p>- 위치 변경: 책자 후면→ 책자 전면</p>	

202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안)

I 지원목적

- 기존재정수입이 기존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여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II 지원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II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단,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IV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1. 1. 1. ~ 2021. 12. 31.

V 보조금의 관리

-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특수학교의 보조금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리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지도·감독
 - 사립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라 교부
 - 사립 고등·특수·고등기술학교: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중간정산을 하고,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하되,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신청액의 적정성 확인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당해 연도의 학생들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절약재정은 노후·위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 투자
 - ※ 학교회계 결산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교부할 수 있음
- 관할청은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음

VI 보조금의 사용제한

- 관할청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등)
 -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불응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회계부정 등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된 때
- 학교회계의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을 때
- 지원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등 기타사정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 적용 시점
 - ▶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부터 적용
 - ※ 부정 청구 시점이 아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
- 적용 대상
 -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08)
 -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09)
 -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0)
 - ▶ 사립학교시설지원 (620-11)
 - ▶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620-13)
 - ▶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620-16)
 - ▶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620-19)
 - ▶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620-20)
- 적용 배제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
 -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다른 부담금
 - ▶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 ※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

배제되거나 학교가 부정청구등에 해당되는 부정수익자인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개별법에 환수 규정만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라 환수 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체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진행



● 법률(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우선 적용

● 공공재정지급금

- ▶ (지급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
- ▶ (정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 (재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 (지급형태) 금전, 채권, 물품, 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 부정청구등의 유형 및 부정이익 가액

구 분	유형 내용	부정 이익 가액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허위청구로 제공 받은 금액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부정청구등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 이자포함	부정이익 가액의×5배	매년 3월 31일까지 공 공기관 홈페이지에 *고액 부정청구등행위자 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①제재부가금 부과분 2회 이상 ②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3배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2배	
오지급		-	

● 공공채정지급금 청구 및 집행

- ▶ 공공채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구 및 집행에 철저
- ▶ 목적지정 사업 예산은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집행

VII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다음 기준에 의거 산출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원

구분	세입(기준재정수입, A)	세출(기준재정수요, B)	재정결함보조금(B-A)
인건비	· 법인전입금 · 기타수입 (인건비성 감사지적 회수금 등) ※ 단, 교특회계에 반납한 금액 제외	·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 법정부담금 · 사업주부담금 · 정산과부족금	부족분 교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산정 시 A>B 경우 차액분을 인건비에서 감액하여 교부
운영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기본운영비 · 입학금, 수업료감면액 · 기타	부족분 교부

☞ 기준재정수입의 입학금, 수업료는 전체 학생 수(지원·감면자 포함) × 입학금·수업료 단가로 함

- ㉞ 기준재정수요의 인건비는 정규 교원, 계약제 교원, 사무직원, 사무직원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 및 업무대행수당 등 포함
- ㉞ 법인전입금 납입률 저조와 학교법인 필요경비 집행기준 초과 집행 시에는 법정부담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감액 반영
- ㉞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는 기준재정수입과 관계 없이 실제 집행액 지원

VIII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 입학금 및 수업료

-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에 따라 계상
 - ▶ 수업료 산정 시 월별 계산
 - 예) 12월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12월분에는 일할 계산, 1,2월분에는 월할 계산
 - ※ 4/4분기 수업료 징수결정액 1/3이 12월분(2/3가 1,2월분) 수업료 아님

2.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법정부담경비보다 우선하여 편성 할 수 있음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기준 ■

-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사업수입+전년도수입+이월금(선택적)
 - ※ 전년도 이월금 중 이월사업비, 임대보증금 미환급금 및 기부목적에 따른 이월금은 제외
- 제세공과금:(관)재산조성비, (항)재산관리비, (목)공과보험료
 - ※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는 반드시 공과보험료에 계상
 - ※ 법인회계 결산 시 세금 및 보험료가 공과보험료가 아닌 타 과목에 계상되었을 경우 학교법인필요운영경비 초과 집행으로 간주 처리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 ※ 운영비용: (관)이사회비, (관)사무비, (관)잡지출

- 운영비용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 소송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운영비용에 포함
- ※ 수익비용: (관)재산조성비, (항)재산관리비, (목)재산유지비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유지(재산유지비, 재해복구비 및 부채상환금)를 위한 필요경비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유지비는 최소한(수익용 기본재산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25%이내)으로 계상
(단, 관할청이 승인한 부채상환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집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시 행·재정적조치(초과금액은 학교회계로 추가 전출조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 이행 시 재정결함보조금(법정부담금)지원액 삭감,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 배제, 사무직원 성과관리 및 사학기관경영평가에 반영)
단, 부득이한 경우 초과 집행사유와 증빙서류 제출 시 타당성 검토 후 행·재정적 조치 제외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에서 제세공과금,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법정부담경비를 제외한 경비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을 소속학교로 미 전출 시 학교법인 운영필요경비 집행 기준 초과 집행시 행·재정적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

- 법정부담금은 법인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계상
-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법인전입금은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
- 재정결함보조금 페널티 기준
- ▶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미만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차감

페널티 산출식 $(차 감 기 준 금 액 - 납 부 액) \times \left(\frac{30 - 납부율}{300} \right)$

- ※ 차감기준금액: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미만 납부 시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 추가 차감
- ▶ 차감액은 당해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 반영
- ▶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을 고려하여 각종 교부금, 시설사업비 지원에서 차등 적용

● 재정결함보조금 인센티브 기준

▶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이상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인센티브 산출식
$(\text{납부액} - \text{인센티브 기준 금액}) \times \left(\frac{\text{납부율} - 30}{300} \right)$

※ 인센티브기준금액: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50%이상 납부 시 기준재정수입 법인전입금 납부액의 5% 추가 지원

▶ 인센티브는 최대 1,000만원 지원

예) 법정부담금 30% 이상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400만원), 납부율 50%이상에 따른 인센티브(700만원) → 최종 인센티브(1,000만원) 지원

▶ 인센티브는 당해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 반영

▶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을 고려하여 시설사업비, 국외연수 포상,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지원에서 우대 적용

3. 기타수입

● 증명료, 잡수입[생산물처분대, 불용물품 매각대, 예금이자, 교내재산 임대료, 변상금(단, 감사지적 변상금 제외)]은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교육과정운영, 학생복지비 등으로 사용)

● 기타수입 중 인건비성 감사지적 회수금은 기준재정수입에 포함하되, 교특회계 반납금은 제외

IX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1. 인건비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며, 부당 청구, 과오 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환수 또는 감액 교부 할 수 있음

가. 정규 교원

▶ 지원대상

- 정원(편성학급 기준) 범위 내의 현원 기준으로 감독청에 임용 보고된 자
- 사립학교의 폐과, 학급 수 감축의 사유로 발생한 과원 교원의 인건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만 지원(단, 초·중등교육과에 보고·수리되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초과 현원 퇴직 후 후임 충원 시 인건비 지원 제외
- 정원기준: 초·중등교육과에서 통보하는 사립 초·중·고·특수·고등기술학교 교원 정원배정 기준
 - ※ 교원 정원배정 기준 변동 시 반영

▶ 지원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년 초과자의 인건비 지원 제외
- 학교별 중·장기 수용계획 상 학급감축이 예상되는 학교는 결원 발생 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는 등 정원 초과 교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 명예퇴직한 공·사립학교 교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사전에 피임용자에게 ①관할청에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하거나, ②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수준으로 보수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 산정기준: 【붙임1】 참고

■ 교직원 징계 관련 인건비 지원 ■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분이 회복되어 인건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징계 관련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무리한 징계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르지 않고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등 법인의 책임 경중 및 사안에 따라 해당교직원의 인건비 또는 대체 기간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청 감사 처분에 따라 학교법인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분이 회복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 여부 검토

나. 계약제 교원

▶ 기간제교원 지원기간

- 한 학교에서 1개월 이상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동일학교에서 총 4년까지 연장 임용 가능, 계약(결원)시작일 또는 계약(결원)종료일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에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1년 이상 연속된 정규교원의 미발령, 정원 외 기간제교원의 연장 및 동일 결원 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교원과 연장(재)계약 가능
-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 기간제교사 지원기준

-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
-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령 미도래 자 포함)인 퇴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14호봉 기준으로 산출

-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재임용) 시 다시 획정함

※ 단, 계약 당시 호봉획정 오류로 인한 호봉 정정은 가능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중간정산은 불가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기간제교원이 요구 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산정 ■

◆ 퇴직금=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1. 월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 × 3/12

3.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직수당임

4.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 성과상여금은 별도 지침에 따름

- 맞춤형복지비는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에 따름

- 급여작업 및 호봉획정은 NEIS 시스템을 이용

- 기간제교원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저호봉자를 임용을 권장

- 상위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원 배제

▶ 전일제강사·시간강사 지원기간

-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기간

▶ 전일제강사·시간강사 지원기준

- 전일제 강사: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

구분	단가(일)	적용기준
가호	90,000	군지역 교량이 없어 선박으로 통행하는 시지역
나호	80,000	시지역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담임교사 업무부여) 시 1일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담임교사로 발령 불가, 담임수당 지급 불가)

- 시간강사: 실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

※ 1교시 수업을 1시간 근무로 산정

구분	단가(시간)	적용기준
가호	22,000	면 지역
나호	19,000	읍 지역
다호	18,000	동 지역

- 주휴수당은 4주(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일일 평균 수당을 지급. 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전일제강사: 1일 단가, 시간강사: 총 근무시간 × 단가 ÷ 실제 근무일수

▣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따르고, 2021년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름
(관련 문의: 초·특수학교 → 초등교육과, 중·고등학교 → 중등교육과)

다. 사무직원

▶ 지원대상

- 정원 범위 내 현원으로 관할청에 보고된 자로 지원기준과 동일한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지원

▶ 지원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초과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재임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사전에 피임용자가 관할청에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도록 안내 후 임용

- 정원초과자(과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 지원(2017.11.1.자 시행)

- ☞ 과원 보유 법인은 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과원 미해소 시, 3년 이후부터 과원자 1인당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감액 지원(2년차 이후부터는 미지원)

■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

1. 과원보유 학교 인건비 감액 지원 비율

구분	유예기간 3년 후	
	1년차	2년차
과원자 1인당 인건비 지원 비율	총 인건비의 50%	미지원

※ 단, 최초 1년차 인건비 50% 감액 시 과원학교에서 결원학교로 파견근무가 선행 또는 진행 중인 경우나 동일 시·군내 결원학교가 없어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과원학교의 정년(명예)퇴직자 퇴직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인건비 100% 지원

※ 총 인건비: 매월 지급하는 나이스 상 급여총액의 합계

2. (예시) 2018.3.1.자 과원 발생인 경우

- 2018.3.1.~2021.2.28. ☞ 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 2021.3.1.~2022.2.28. ☞ 인건비 50% 감액(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1년차)
- 2022.3.1.~ ☞ 인건비 미지원(2018.3.1.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2년차부터)

※ 연중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과원발생일 이후 첫 1일자로 적용

▶ 산정기준: 【붙임1】 참고

■ 사무직원 임용시 사전협의 ■

- 대상: 신규임용(인사교류 및 파견근무), 경력직임용, 전직임용, 일반승진, 근속승진
 - ※ 대우직원선발: 사전협의 대상 제외. 단, 임용결과 보고 대상
- 사무직원 임용 시 반드시 임용예정일 2개월 전에 사전협의
(예)2021.7.1.자 임용 예정일 경우 2021.4.30.까지 사전협의
-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미지원
- 사전협의방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참고

라. 사무직원 결원 대체인력

▶ 지원대상

-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시설)이 출산휴가, 휴직, 병가, 미발령, 징계,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용한 행정대체인력(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 ※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도 개별 결원기간을 합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예, 병가 15일 + 장기채직휴가 10일 + 연가 5일 = 30일 인 경우)
 - ※ 학교 자체 상시근무 인원 채용(무기계약 전환)은 예산 지원 불가
 - ※ 동일 시·군내(과건 및 인접 시·군 희망자 포함) 사무직원의 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한시적 대체인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정원 초과자(과원)를 우선 과건 시행, 미이행 시 대체인력 인건비 미지원

▶ 지원기준

- 기본급: 정액(2020년 기준 1,823,000원)
 - ※ 시설관리용역 인력 채용시 2020년 기준 월 2,788,630원 지원
 - ※ 일용인부 채용 시: 정부노임단가(보통인부기준) 지원
- 명절휴가비(설 추석):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1회 50만원)
- 정액급식비: 정액(월 14만원)
- 가족수당: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월 12만원 한도, 셋째 이후 자녀에 한하여 초과 지급 가능)
- 각종보험료(기관부담금): 개별법령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 ※ 단, 사무직원 과원법인은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불가
 - ※ “2021년도 사무직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마. 업무대행수당

▶ 대상자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직원
 - ※ 업무대행 사무직원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무직원

▶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 사무직원이 1명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5인을 초과할 수 없음)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단, 행정지원 대체인력 미활용 시에만 수당 지급 가능)
- 월 지급액 = 20만원 × (1/업무대행 지정 인원)
- 반드시 업무 대행이 시작되지 전에 업무대행자 지정(업무대행 수당 소급 불가)
- ※ 과원법인은 업무대행수당 지원 불가

2.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율에 의거 산출된 납부기준액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교원 및 사무직원)

구 분	산 정 근 거
연금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8조의2
건강보험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재해보상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2

- 기간제교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지원

구 분	산 정 근 거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 용 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 ② 고용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적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 ③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월액
- 법인전입금 납입률과 학교법인 필요경비 집행기준 초과 집행 시에는 법정부담금의 기준재정수요액에 감액 반영

3. 학교기본운영비

- 【2021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의 “202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
 - ▶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 2021년 1~2월분: 2020.9.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교특회계 본예산 작성 기준)
 - 2021년 3~12월분: 2021.3.1.자 학급·학생 수 기준 산정
 - ▶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항목
 - 학교기본운영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건물유지비, 동력사용료(특성화고·고등기술·특수학교)
 -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 체험형 안전교육 교구 구입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학교평등예산제(초·중·고·각종학교), 교원연구비(초·특수학교),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2021년 1~2월분)
- 과원 직원의 타 학교법인으로의 전출·입(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 ▶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법인에서는 반드시 도내 과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과원 직원의 전출 및 파견 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실시(협의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과원 해소에 따른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결원법인에서 과원자 채용 시	▶ 대상: 결원법인 ▶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1,000만원(2년간)
인사교류로 과원 해소 시 (과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대상: 과원법인 ▶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파견근무제 시행 시	▶ 대상: 결원법인(1년 이상 파견받을 경우) ▶ 인센티브: 학교운영비 500만원(1년) ※ 파견근무자는 직급보조비 지원(월 20만원)

4. 고교 무상교육 등 수업료 지원 · 감면

가.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

▶ 지원근거

-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지원 · 감액)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분	2021년 1~2월 (2020학년도)		2021년 3~12월 (2021학년도)
	1학년	2,3학년	전 학년
지원학년	1학년	2,3학년	전 학년
대상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전체	전체 재학생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됨

- 지원액: 수업료 × 전체 학생 수

나. 고교 무상교육 외 수업료 감면

- 고교 무상교육 수업료 감면 외 1학년 2학기(2021.1~2월분) 수업료 감면은 2020학년도 학비 감면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지침에 의함

5. 기타

-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정사업에 한하여 실제 계상된 범위 내에서 인정

X 기준재정수요액 외 지원(실집행액 지원)

1.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지원

● 가입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재정결합보조금 정산 시 에듀과인 통합자산관리(재산, 물품)에 등재 내역 증빙 자료로 제출

● 가입대상

▶ 건물

-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등과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 등의 건물
- (제외대상)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등
- 공제회비 산출방식 : 130원/m²

▶ 물품

- 소유, 사용, 관리하는 교구, 설비, 실험, 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취득금액이 있는 미술품 가입 가능)
- 단일품목 당 1백만 원 이상 가입 가능
-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동일 종류별 묶음으로 가입 가능(수량은 1식 입력)
- 공제회비 산출방식 : 가입금액 × 0.0248%

▶ 부속물(공작물)

-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사용하는 구조물(관람석, 우천로, 급수대, 조희대, 옥외 국기계양대, 스탠드, 연결통로, 인조잔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제외대상) 공동부속물(지자체의 명의 부속물)
- 공제회비 산출방식 : 가입금액 × 0.015%

▶ 고등학교 이하 지진공제(특별담보)

- 보상하는 지진: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정한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 지진
- 공제회비 산출방식 : 교당 130,000원/년(학교급별 정액회비로 면적에 관계없음)

●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 ▶ 교육시설의 우연한 재난,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법률적 손해배상을 보장

▶ 공제회비 산출방식 : 7원/m²

■ 가입 시 주의사항 ■

- ◆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재산, 물품) 등재 후 공제회 가입
- ◆ 건물 가입시 무상 담보되는 교구·설비 및 부속물을 확인하여 공제 가입시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입【붙임 3】 건물 가입 시 담보하는 기본 교구·설비 및 부속물의 기준 참조)

※ 건물의 부속물, 물품 등을 교육시설재난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재난 발생(태풍 피해, 화재 발생 등)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재산피해 보상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업무상 중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업무상 중과실 ■

- ◆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2.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

<안전총괄담당관 시설안전담당 ☎278-1753>

<학교지원과 사학시설담당 ☎268-1565>

- 관련: 안전총괄담당관-4569(2020. 9. 4.) “2021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 점검, 실태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 예산 반영”
- 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2021년 상·하반기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지원
 - ▶ 대상: 2020년 하반기 지정·고시된 제2종 및 제3종시설물(2020. 12. 정기점검 결과 별도 알림)
 - 제2종시설물: 옹벽, 절토사면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C,D,E인 건축물

▶▶ 2021년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

- 제2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기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경과년수	기준	시행계획 (안)
준공 후 15년 경과	1) 연면적 1,000㎡~5,000㎡ 미만의 교육시설 2) 연면적 5,000㎡~30,000㎡ 미만의 건축물 3)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가) 대상 : 건축물 준공일 2005.1.1.~2005.12.31.인 건축물대상 나) 각급 기관(학교) 외부용역 실태조사 판정결과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 [양호], [주의관찰] → 미지정 후 3년마다 실태조사
준공 후 10년 경과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건물등급 기준		C,D,E 급만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외부용역결과 또는 실태조사 판정에 근거함)

- 지원 기준단가

- 제2종시설물: 해당 시설물 견적가에 따른 실 집행액 지원
- 제3종시설물: 연면적 5,000㎡미만 176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220만원/동
(실 집행액 지원)

●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지원

- ▶▶ 대상: 준공일자 기준(2005.1.1.~2005.12.31.)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 지원 기준단가: 연면적 5,000㎡미만 88만원/동, 연면적 10,000㎡미만 110만원/동

XI 행정사항

1. 관계법규 준수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경상남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2021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등 준수하여 집행

2.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 학급감소, 정원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 상황을 예상하여 과원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 동일구 내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권장

3. 초과근무수당 관리 철저

- 초과근무신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신청 및 수기대장은 인정하지 않음(재정결합보조금 정산 시 NEIS 점검)
- 초과근무수당이 최근 2년의 평균 지급액 대비 현저히 증가한 학교는 수시 점검하여,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가산 징수
- 초과근무 부당운영사례 적발 시 기관 특별감사 등의 행·재정적 조치 및 기관 지급 한도액 재설정
-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 시에는 출근 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고,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함
- ※ 초과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지문인식기) 사용을 권장
- ※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4】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참고

4. 법정부담금 증대방안 강구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장래의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익 발생이 가능한 재산으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재정 및 수익구조가 개선되도록 노력
 - ▶ 법인회계 이월금을 고의적으로 과다 발생시켜 차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지 말 것
 - ※ 법인회계 결산 분석 후 고의성이 보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 개선 계획서 등 제출토록 조치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공제 후 학교회계로 전출할 것
 - ※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5】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5.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수업료 수입 및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지 않도록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건비 소요액 판단 착오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인건비 과부족 및 정산잔액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 보조금 정산 결과 인건비 과부족 및 정산잔액 과다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현장 지도 점검 실시

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

- 별도 공문으로 통보함

【붙임 1】

인건비 산정기준 요약표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름 -

구 분	산 정 기 준	비고(관련규정)
기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의한 봉급액 ○ 일반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의한 봉급액 ○ 근속가봉: 71,000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41~50호봉, 가산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함)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3·별표5
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연수 1년 이상부터 월봉급액의 5% 지급, 매년 5% 단위 인상 - 근무연수 10년 이상은 50% ○ 지급시기: 1월, 7월 보수지급일(연 2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7조 및 별표2,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정근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연수계산: 정근수당 지급방법 준용 ○ 지급액: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20년 이상: 100,000원 ※ 추가가산금: 교원, 일반직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게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자에게 월 30,000원 가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7조 및 별표2,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 직계존속, 만19세미만 직계비속, 만20~59세 직계존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지급요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함 ○ 지급인원: 최고 4명까지(단,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 지급액: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40,000원, 기타 부양가족 2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0,000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교원 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별표5,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p>시간 외 근무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교원(교장은 제외), 사무직원 ○ 지급단가: 향후 단가 변동분이 고시되면 변동된 단가 적용 [2020년 단가] <table border="1" data-bbox="363 443 1091 725"> <thead> <tr> <th>교원</th> <th>단가</th> <th>일반직, 특정직, 별정직</th> <th>단가</th> </tr> </thead> <tbody> <tr> <td>교감</td> <td>14,288</td> <td>5급</td> <td>14,072</td> </tr> <tr> <td>교사 30호이상</td> <td>13,375</td> <td>6급</td> <td>12,002</td> </tr> <tr> <td>20-29호봉</td> <td>12,459</td> <td>7급</td> <td>10,841</td> </tr> <tr> <td>19호봉이하</td> <td>11,216</td> <td>8급</td> <td>9,733</td> </tr> <tr> <td></td> <td></td> <td>9급</td> <td>8,79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정액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확인 없이 월 10시간분 지급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일마다 1/15을 감하고 지급> - 초과근무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의 지급 시간 수 계산법 따름 ○ 지급 시간: 월 정액분 포함, 월 최고 67시간까지 지급 가능 ○ 유의사항: 불필요한 시간 과다계상 금지 [관련규정 준수] 	교원	단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단가	교감	14,288	5급	14,072	교사 30호이상	13,375	6급	12,002	20-29호봉	12,459	7급	10,841	19호봉이하	11,216	8급	9,733			9급	8,798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별표1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p>
교원	단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단가																							
교감	14,288	5급	14,072																							
교사 30호이상	13,375	6급	12,002																							
20-29호봉	12,459	7급	10,841																							
19호봉이하	11,216	8급	9,733																							
		9급	8,798																							
<p>관리업무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학교장(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에 보고된 자, 직무대리 제외) ○ 지급액: 월봉급액의 7.8%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2</p>																								
<p>연가보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사무직원(교원은 기관 파견 근무 시 지급) ○ 지급기준일: 6월30일(5일), 12월 31일(6일 이내) 또는 퇴직일 전일, 인사발령일 ○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11일 이내) ※ 2021년 지급액 변동분이 고시되면 변동사항 적용 (2020년 기준: 연가보상 최대일수 11일) - 연가보상일수: 미사용 연가일수 × {12월-제외기간(월)}/12 ※ 제외기간: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는 절상)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5,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p>																								
<p>정액급식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140,000원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p>																								
<p>명절휴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봉급액의 60% ○ 지급시기: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p>																								
<p>직급보조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400,000원), 교감(250,000원) - 사무직원: 5급(250,000원), 6급(165,000원), 7급(155,000원), 8 ~ 9급(월 145,000원) 	<p>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6 및 별표15,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p>																								

교원보전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교장·교감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원 ○ 월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70,000원 / 교감: 10,000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학교 교원: 18,000원 - 도서벽지 외의 지역 학교 교원: 15,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2-나)
위험근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취급관리자의 정원(자격증 소지자)이 배정된 학교에 한해 지급 가능 ○ 월 지급액: 4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별표8,9
교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 ○ 월 지급액: 25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2-다)
교직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 교육경력과 55세 이상인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연수 계산 기준일: 매달 1일 ○ 월 지급액: 5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2-다 1호)
보직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7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2-다 2호)
특수교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 월 지급액: 7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2-다 3호)
담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13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2-다 4호)
실과교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공업계학과 설치 학교 교장·교감과 다음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공업, 토목, 건축,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 월 지급액: 1~4호봉(25,000원), 5~8호봉(30,000원), 9~13호봉(35,000원), 14~21호봉(40,000원), 22~30호봉(45,000원), 31~40호봉(5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2-다 4호)
대우공무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사무직원 중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 ○ 월 지급액: 기본급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대우공무원수당과 월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 기본급과 상위직급 월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별표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기술정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기술직군 사무직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사무직원 ○ 월 지급액: 5급 50,000원, 6~7급 30,000원, 8~9급 2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기술정보수당 1호)

보건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보건교사 ○ 월 지급액: 3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2-다 6호)
영양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영양교사 ○ 월 지급액: 3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2-다 8호)
사서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사서교사 ○ 월 지급액: 2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2-다 9호)
전문상담 교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 월 지급액: 2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2-다 10호)
특수직무수당 (학교운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사무직원 ○ 월 지급액: 3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3-바 20호)
겸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통합·운영학교의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 ○ 월 지급액: 교장(100,000원), 교감(50,000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2-다 7호)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대상자별 지급요율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추후 통보 예정
육아휴직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육아휴직)한 남녀 교원 및 사무직원 ○ 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70만원~최대150만원), 육 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70만원~최대120만원) 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교원 및 사무직원인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250만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 는 교원 및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 까지는 시작일 기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시작일 기준 월봉금액의 80% 금액(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7개월째부 터 12개월째까지는 시작일 기준 월봉금액의 50% 금액(최대 120만원)을 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3, 공무원보수 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붙임 2】

사무직원 정원 기준

1. 초등학교

학급 \ 직렬	교육행정/사무/시설/운전/위생				계
	6급	7급	8급	9급	
5학급 이하		1		1	2
6~13 학급		1	1	1	3
14학급 이상		1	2	1	4

2. 중학교

학급 \ 직렬	교육행정/사무/시설/운전/위생				계
	6급	7급	8급	9급	
7학급 이하		1	1	1	3
8~15 학급	1		1	1	3
16~20 학급	1	1		1	3
21~30 학급	1	1	1	1	4
31학급 이상	1	1	2	1	5

3. 고등학교

학급 \ 구분		교육행정/사무/시설/운전/위생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고 특목고	12학급 이하		1	1		1	3
	13~20 학급		1	1	1	1	4
	21~29 학급	1		1	2	1	5
	30~33 학급	1		1	2	2	6
	34학급 이상	1	1	1	1	2	6
특성화고	9학급 이하		1		1	1	3
	10~14 학급		1	1	1	1	4
	15~17 학급		1	1	2	1	5
	18~20 학급	1		1	2	1	5
	21~30 학급	1	1	1	2	1	6
	31학급 이상	1	1	1	2	2	7

4. 특수학교

학급 \ 직렬	교육행정/사무/시설/운전/위생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2학급 이하		1		1	1	3
13~23 학급		1	1	2	1	5
24~29 학급		1	1	2	2	6
30학급 이상	1	1	1	2	1	6

5. 중치(가산)인원

☞ 연도 중 정원기준 변경 시 별도 통보

【붙임 3】

건물 가입 시 담보하는 기본교구·설비 및 부속물의 기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 자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연구시설공제(이하 “시설공제”라 한다)의 건물 가입 시 별도의 회비 부담없이 담보하는 기본교구, 기본설비 및 기본부속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구"라 함은 공제 가입된 건물에서 회원 및 학교의 업무와 학업을 위하여 필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교구를 말한다.
2. "기본설비"라 함은 시설공제에 가입된 건물에서 건물의 쾌적한 환경과 원활한 기능을 위해 설치된 설비로서 제4조에서 정한 설비를 말한다.
3. "기본부속물"이라 함은 시설공제에 가입된 건물의 부속물 중 회원·학교의 건물 또는 토지에 부속된 것으로서 제5조에서 정한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교구의 종류 및 한도액) 기본교구의 종류 및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비고
칠판(전자칠판 제외)	곡면, 승하강	1조	926	
	친환경(클린)	"	1,990	
게시판	고정형	"	803	
교탁	표준형	"	300	
실험대	"	"	1,000	
청소도구함	"	"	300	
학생용 책·결상	"	1인용	90	
교사용 책·결상	"	"	500	
급식식탁·의자	"	"	80	
학생용 사물함	"	"	54	
교사용 캐비닛	"	"	300	
신발장	"	"	62	
책장	1,800*2,100	"	1,101	
진열장	800*1,900	"	636	
파티션	표준형	m2	113	
교과서(미불출)	검·인정도서	권	구입금액	
침대(기숙사)	1층 침대	1조	410	
	2층 침대	1조	910	

<비 고>

1. 기본교구 중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재고자산은 기본교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기본설비의 종류 및 내용) 기본설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및 내용
전기 통신 설비	<p>1.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조명(LED포함) 및 전열설비와 이에 부속된 분전함, MCC패널(전동기제어반), 최대전력관리장치, 비상용 발전기 및 비상 전원 저장시스템(소방용), 배선 및 배관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축전지설비, CVCF(정전압정주파수 공급장치), UPS(무정전전원장치) 등 특수전원설비, 중앙(자동)제어설비(에어컨중앙제어기 제외), 감시설비, 친환경에너지설비(태양열, 지열 등)는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2. 방송설비 소리의 증폭 및 각종 음성정보를 창조하거나 먼 곳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상방송설비(체육관 방송설비 포함)로서, 배관, 배선, 출력제어기, 천정·벽부형 스피커, 분배기, 공시청, 위성설비, 방송영상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역설비는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3. 통신설비 전화 및 랜설비로서, 배관, 배선 및 시스템박스, 허브,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일반전화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컴퓨터 서버, CCTV설비(폐쇄회로텔레비전)는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4. 피뢰설비 낙뢰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피뢰침, 피뢰도선, 접지극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기계 설비	<p>1. 냉·난방설비 건물의 냉방과 난방을 위한 설비로서, 냉·난방시스템, 방열기, 보일러, 전기온돌패널, 선풍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용량을 초과하여 추가 설치한 냉·난방설비, 이동형 냉·난방기는 물품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구분	종류 및 내용
	<p>2. 급·배수설비 건물에 부착되어 물을 공급하고 배수하는 설비로서, 배관, 물탱크, 위생기구, 개수대, 싱크대, 각종 펌프, 압력탱크, 고정형 음수대, 고정형 정수기, 외부 그리스트랩 및 정화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이동식 정수기는 물품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3. 환기·배연설비 교실, 급식실, 화장실, 실험실 등의 환기 및 배연을 위한 설비로서, 공조기, 환기 덕트, 환풍기, 클린룸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흡후드, 항온항습설비는 물품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4. 승강설비 사람 및 물건을 건물의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승객용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 덤웨이터(급식용), 도서용승강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주차용 승강설비 및 일반 승강설비 증축에 따른 연면적 증가 시 건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5. 가스설비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가스배관, 옥내 가스저장탱크, 가스누설탐지장치, 가스계량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옥외에 별도 추가 설치한 가스저장탱크는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6. 무대기계장치 공연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무대에 설치한 기계장치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소방 시설 설비	<p>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p>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이</p>

구분	종류 및 내용
	<p>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다만, 중앙감시용 (네트워크 구성포함)시스템은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p> <p>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p>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p>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p> <p>6. 방화구획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연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기타	<p>1. 교육활동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블라인드, 커튼, 방충망, 방범창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2. 법정수수료 재난 복구공사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위한 사용 전검사수수료, 석면조사비용, 인지대 및 기타 법정수수료를 말한다.</p>

제5조(기본 부속물의 종류 및 한도액) 기본 부속물의 종류 및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및 한도액				
교문	경계용 담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교문(정문 및 후문)을 말한다.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교문	스텐, 석재 등	표준형	1식	33,570
담장	대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담장을 말한다. 다만, 옹벽, 석축, 화단, 테니스장 및 비구멍웬스 등과 대지내부의 구획을 위하여 설치된 담장은 부속물로 별도 가입 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담장	철제형	표준형	m ²	313
		디자인웬스	"	"	470
		메쉬형	"	"	135
		적벽돌담장	"	"	284
블럭담장		"	"	212	
간판	공제가입건물 및 부속물에 부착된 간판(교명)을 말한다. 다만, 입간판은 부속물로 별도 가입 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간판	철재, 석재 등	표준형	1조	500
차양	공제가입 건물에 부착된 차양, 옥외계단 지붕 및 옥상에 별도로 설치한 차양을 말한다. 다만, 건물 외부에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우천로(도복도) 및 연결통로는 부속물로 별도 가입 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차양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 등	표준형	m ²	160
국기 게양대	학교 내 국기 등의 게양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규격	단위수량	한도액
	국기게양대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등	표준형	1식	3,000

【붙임 4】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p412~413) 내용 일부 발췌 -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 2) 고의적 위반 행위
 -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 4)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5)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6)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7)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 3. 1.)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 2)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5】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1. 법정부담금 납부율 3%미만 학교법인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미만인 경우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단, 학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시설사업은 지원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사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사업 대상 학교 선정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려

3.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초과 학교법인

- 2016.11.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별표]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변경으로, 학교법인 운영필요경비 인정 기준 조정
 - ▶ 운영비용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20%이내
 - ▶ 수익비용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25%이내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시 행·재정적 조치(초과 금액은 학교회계로 추가 전출 조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 단, 부득이한 경우 초과 집행사유와 증빙서류 제출 시 타당성 검토 후 행·재정적 조치 제외

3. 관할청 징계 요구 미이행 학교법인

- 교육청(감사관) 또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감사결과 징계요구 사항에 대하여

표창 등 감경사유가 없는데도 감경 처분할 경우 재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사학비리가 발생하는 법인에서 ‘학교알리미’교육정보공시제도의 공시항목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를 미공시하고, 학교홈페이지에 미공개할 경우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4. 각종 법규 위반 및 시정조치 미이행 학교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지원)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따라, 학교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학교회계, 각종 정책 및 사업 중 부적정한 운영 사례 적발 시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2회)를 요구하고, 시정 등 요구 미이행 시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붙임 6】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내용

【 예시 1】

1. 교육청 소관 공·사립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여 교부 받은 경우
 - 1-①. 공·사립학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②. 공·사립학교가 정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해당 학교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하였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대상 인지 여부
 - 1-③.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비목의 예산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 공·사립학교에서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의 행위를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 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관련 처분을 해야 함
 -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만 제외하고 있어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사립학교 포함)
2.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인 학교의 부정청구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짐
 - ※ (예시) 보조사업자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다집행하는 등 임의 처리한 보조금 2억 1,000만원 환수 결정(기재부 보도자료, '19.10월)
3.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함

- 따라서, 해당 학교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시 2】

2. 교육청에서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을 거쳐 공·사립학교에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
 - 2-①. 목적사업비로 교부 받은 금액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②. 학교에서 받은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본관 교실 바닥 공사’로 집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 유형인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③.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면 제재부가금을 학교에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1. 목적사업비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2. 해당 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인 목적사업비를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목적(용도)과 달리 사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른 ‘부정청구 등’ 행위 해당된다고 보여짐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령·자치법규 등에서 규정한 예산 전용(변경)기준을 준수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예시 3】

3.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동결 및 인하 등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원비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교육청에 원비를 거짓이나 허위로 보고하게 됨으로써,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학급운영비를 과다 수급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유치원에서 직접 청구하지는 않으나, 사립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 수준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 인지 여부

1.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 등’ 이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의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학급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 항목에 따라 학급운영비 수준이 결정된다면, 유치원의 보고행위를 청구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함
 -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항목을 토대로 학급운영비가 결정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보고하여 운영비를 과다 수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 등’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